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백 일 권 의원)

의안 번호	421
----------	-----

발의연월일: 2023. 1. 20.

발 의 자: 백일권·정영수·이규근·  
이금태·오연환 의원

## 1. 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보행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추가 규정(안 제2조)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외)

## 3. 개정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4조

- 「교통안전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도로교통법」 제12조”로, “교통 사고”를 “교통사고”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을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엘로카펫”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엘로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공사시방서 등 에”를 “공사시방서 등에”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중 “교통관련봉사단체”를 “교통관련 봉사단체”로, “해야하는”을 “해야 하는”으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나. (생 략)</p> <p>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p> <p>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p>	<p>제1조(목적) ----- 「도로교통법」 제12조----- 교 통사고-----</p> <p>제2조(정의)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p> <p>라. -----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p>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  
원만 해당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제60  
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  
안학교

3.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

마. 「초·중등교육법」 제60  
조의2 -----

-----  
-----

3. ~ 5. (현행과 같음)

6. “엘로카펫”이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을 조성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랑  
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  
을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  
치”란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  
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  
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  
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  
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  
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  
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  
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  
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① 구청

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엘로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생략)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  
-----  
-----  
-----

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통관련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생략)

----- 공사시방서 등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1조(예산지원) -----  
----- 교통관련 봉사단체 ---  
-----  
---- 해야 하는 -----  
----- 지원할 -----  
--.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관련 법령

##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②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